2020년도 제1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0. 8. 3.(월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정인, 이성엽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5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분과위원
3. 안건상정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765건(안건번호 제2020-85898호~8756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85898호~85904호는 블로그에서 국내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85905호~85908호는 블로그 등에서 무단 번역한 미국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85909호~85921호는 웹하드에서 게임, 국내 방송 프로그램, 일본 만화(jpg 파일)를 판매한 사안임. 게시자가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71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56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5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2쪽의 OSP명, 5쪽의 OSP명, 민원인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6쪽~8쪽 상단의 저작물명, 방송사명,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8쪽 하단~10쪽 상단의 OSP명, 10쪽 하단의 저작물명, 민원인 성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취소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다 하였고,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B 위원: 동의함.
- C 위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인 신고 내용, 저작물명, 방송사명,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민원인 성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0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Adobe Systems Inc.', 'Microsoft Corp.', '㈜한글과컴퓨터', 'Autodesk Inc.', '넷플릭스', '미국 HBO Max', '미국 FOX', '월트 디즈니', '유니버설픽쳐스', '워너 브러더스', '소니픽쳐스', '영국 BBC one', '영국 Channel4'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중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76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85898호~87566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5898 호~8590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블로그에서 우리나라 영화 및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85898호는 영화 '☆☆☆☆☆☆☆ 전체 분량(1시간 56분 26초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이 영화는 2019. 2. 27. 극장에서 개봉, 2019. 3. 14.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복제·전송자는 2019. 3. 17. 불법복제물을 게시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재생하면서)영상물 시작 부분에 "본 영화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사적 이용 범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 상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의 저작권 침해 경고 안내가 나옴.

복제전송형태와 관련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표현은 하였으나, 정확히 말하면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방식임. 해당 영상물은 블로그 게시물과는 별개로 ★★★ 동영상 플레이어에 저장되고, 해당 url도 별도로 존재함.

안건번호 제2020-85899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한 화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0-85903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한 한 화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같이 총 7개 안건, 33개 게시물에서 영상 저작물을 무단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건과 방송사, 방영일 등은 검토보고서에 표로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 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85898호~8590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영상 저작물을 무단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함.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이견 없이 시정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게 시자가 영상 저작물을 해킹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쉽게 업로드하는 것 같은데 불법복제물 업로드를 기술적으로 애초에 막을 수 없는지 의문임.
- 성원영 전문위원: 본인이 다운로드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제한 파일이 있다면 블로그에 쉽게 업로드 할 수 있음.
- A 위원: OSP에서 기술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인

'★★★'에서 저작권침해 필터링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블로그 게시물이 시정 조치로 인해 삭제되더라도 ★★★ 동영 상 플레이어 url을 별도로 저장해두거나 다른 사람이 해당 url을 공 유해갔다면 여전히 다른 게시물에서 이용가능하게 됨.

- B 위원: 저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하자는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5898호~8590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한 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위 방송물은 2019. 6. 17.부터 2019. 7. 18.까지 방영함. 민원인은 ★★★ 동영상 플레이어 URL을 신고하였고, 해당 동영상을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를 통해 제공한 블로그 게시물은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인 것으로 확인됨. 민원인은 지난전체위에서 검토한 바 있는 타 커뮤니티사이트의 2019. 9. 19.자 게시물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접 링크(direct link)를 보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을 특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임. 두 개 안건은 동일한민원인이 신고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본문과 댓글에는 각각 "■■■■■■ ■■", "△△△△△△△△", "▲▲▲▲▲▲▲▲▲", "▽▽▽▽▽▽ ▽", "▼▼▼▼" 등의 표현이 있어 게시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 역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 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85905호~8590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은 어떤 내용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블로그에 접속하여 게시물 목록 및 다른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다수의 번역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게시자들은 한 화 전체 또는 상당한 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다수의 번역 게시물을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저는 가결 의견임.
- C 위원: 블로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 게시자가 직접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는 낮아보이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2차적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제한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가결함이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5905호~8590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5909호~8592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에서게임, 국내 방송 프로그램, 일본 만화(jpg 파일)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안건은 검토보고서에 표로 정리해두었음. 안건번호 제2020-85909호는 약 65,000원에 판매 중이며, 안건번호 제2020-85920호~85921호는 약 4,500원에 판매 중임. 안건번호 제2020-85910호~85919호는 모두 우리나라 최신 방송 프로그램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85909호~8592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A 위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가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C 위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5909호~8592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5922호~8756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음악 '마리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5928 호는 가수 화사가 2020. 6. 29. 발매한 앨범 '마리아'의 수록곡임. 작

사·작곡에 박우상(RBW),화사(Hwa Sa)가 참여하였고, 편곡은 박우상 (RBW)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신곡과 인기곡 105곡을 압축파일 형태로 190P에 판매 중임.

(음악 '여름 안에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85931호는 가수 '싹쓰리'가 실연한 곡 '여름 안에서'임. 이 곡은 2020. 7. 11. 발매된 앨범 '여름 안에서 by 싹쓰리'의 수록곡으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 그룹인 '싹쓰리'가 실연한 것임. 멤버인 '유두래곤'은 유재석이고, '린다G'는 이효리, '비룡'은 가수 비임. 원곡 실연자는 '듀스'임. 작사, 작곡은 '이현도', 편곡은 '박문치'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실시간 인기 음원 압축파일을 무료로 제공 중임.

(영화 '결백'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6855호는 2020. 6. 10. 개봉하여 현재까지 상영 중인 영화 '결백 (2019)'임. 2020. 7. 30. 기준 누적관객 865,683명인 영화로, 2020. 7. 9.부터 IPTV, VOD 서비스 시작하여 케이블TV VOD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를 한 인기영화임. 밴드 '◁◁◁◁◁◁◁(에서 mp4 파일로 제공하고있음.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87135호는 2020. 7. 8. 개봉하여 현재까지 상영 중인 영화로, 주연이 샤를리즈 테론, 니콜 키드먼, 마고 로비임. 직장 내성폭력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미국 보수 언론 매체 경영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212P에 판매 중임. (영화 '소리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7190호는 2020. 7. 1. 개봉하였고, 2020. 7. 16.부터 IPTV, VOD 서비스 시작하였음.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 작품임. 판소리 뮤지컬 영화임. 밴드 '◀◀◀'에서 제공 중임.

(영화 '인베이젼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87204호는 2020. 7. 1. 개봉한 러시아 SF 영화임. 우리나라에선 개봉하지 않은 영화 Attraction(2017)의 속편임. 2020. 7. 14. IPTV, VOD 서비스를 시작함. 밴드 '▷▷▷▷▷▷▷▷'에서 제공 중임. 해당 밴드 회원수는 7명에 불과함.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영화 '라이브', 최신 인기영화 '반도'의 mp4 파일을 밴드에 업로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심의위원들께서는 개인 PC로 심의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의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밴드에 대한 시정권고는 어떤 OSP에 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에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지금은 하나의 법인으로 알고 있음.
- A 위원: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사람이나 시정권고를 받는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 성원영 전문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고객인 이용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 건번호 제2020-85922호~8756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85922호~8756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불법이 횡행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함이 타당함.
- C 위원: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5922호~8756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제2020-85898호~8756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증 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 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8. 10.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정인

위원 이성엽